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2. 5 선고 2019가단5265348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5. 18 선고 2021나12673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2. 5 선고 2019가단5265348 판결

전문

원 고 서울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산

담당변호사 김기현, 유장미

피 고 1. A

2. B

소송대리인 A

변론종결 2021. 1. 22.

판결선고 2021. 2. 5.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9,199,627원과 그 중 8,816,567원에 대하여 2009. 3. 12.부터 2009. 10. 7.까지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2019. 12. 6.까지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들 사이에 2015. 1. 10.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취소하고,

나. 피고 B는 피고 A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소1985898호로 피고 A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9. 10. 8. “피고는 원고에게 8,861,638원과 그 중 8,816,567원에 대하여 2009. 3. 12.부터 2009. 10. 7.까지 연 18%,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 판결은 2009. 11. 5. 확정되었다. 위 구상금 채권과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 A에 대하여 가진 대지급금 채권액은 383,060원이다.

나. 망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2015. 1. 10.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피고 B, 자녀인 피고 A과 D, E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다. 망인은 사망 당시 상속재산으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다. 피고들과 D, E은 2015. 1. 10. 피고 B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이하 그 중 피고 A의 상속분에 관한 피고들 사이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이 사건 분할협의’라고 한다)를 한 다음, 2015. 1. 2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피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 A은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자신의 상속분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마. 원고는 피고 A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구상금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5호증의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원고에게 위 판결금 중 8,816,567원과 대지급금 383,060원을 합한 9,199,627원과 위 판결에 따라 그 중 8,816,567원에 대하여 2009. 3. 12.부터 2009. 10. 7.까지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인 2019. 12. 6.까지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1) 피보전채권의 발생

원고는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피고 A에 대하여 위 구상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이는 이 사건 분할협의를 대하여 사해행위취소를 구할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가)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므로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고, 이를 이전받은 사람이 악의가 없었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다47016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피고 A이 피고 B와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하면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원고를 포함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따라서 피고 A의 상속분에 관한 이 사건 분할협의를 일반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A은 이로 인하여 일반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 B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피고 A을 포함한 자녀들인 3남매의 협의로 10여 년간 투병하다가 사망한 망인과 피고 B가 같이 살던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B에게 협의분할한 것이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의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 A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2/9 지분에 관하여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한편 채권자는 사해행위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방법으로 수익자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대신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할 수도 있으므로(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등 참조),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B는 피고 A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사 고흥석

[별지]

목 목

1동의 건물의 표시

경기도 의정부시 빌라 동

[도로명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철근콘크리트조 평층레브지붕 4층 다세대주택

1층 144.66㎡

2층 ~ 4층 각 148.56㎡

지층 48.99㎡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경기도 의정부시 대 478㎡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3층 호 철근콘크리트조 43.65㎡

대지권의 표시

1 소유권대지권 478분의 25.01

- 이상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관할 -

